

「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약관」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 1 조(목적) <생략>	제 1 조(목적) <좌동>	
제 2 조(용어의 정의)	제 2 조(용어의 정의)	
① <생략> 1. ~7. <생략>	① <좌동> 1. ~ 7. <좌동>	
② <생략>	② <생략>	
제 3 조(이용 계약의 성립 및 약관의 변경)	제 3 조(이용 계약의 성립 및 약관의 변경)	
① <생략> ② <생략> 1. ~ 4. <생략> 5.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 또는 <u>은행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 6. 가입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관계법령 및 <u>기타 은행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</u> 7. <생략>	① <좌동> ② <좌동> 1. ~ 4. <좌동> 5. <u>해킹 등</u>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 또는 <u>서비스 기관에 실질적 피해를 발생시키거나, 그러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</u> 6. 가입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관계법령을 <u>위반하여 신청한 경우</u> 7. <좌동>	서비스기관의 자의적인 서비스 제한 규정 개선
③ ~ ⑧ <생략>	③ ~ ⑧ <좌동>	
제 4 조(서비스의 이용 개시) ~ 제 14 조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 <생략>	제 4 조(서비스의 이용 개시) ~ 제 14 조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 <좌동>	
제 15 조(관할법원)	제 15 조(관할법원)	
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<u>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u>	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<u>금융소비자 주소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</u>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. 다만, 제소 당시	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부칙<제정></p> <p>본 약관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>부칙<1></p> <p>본 약관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</p> <p>부칙<2></p> <p>본 약관은 2024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민사소송법」의 관계 규정을 준용합니다.</u></p> <p>부칙<제정></p> <p>본 약관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>부칙<1></p> <p>본 약관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</p> <p>부칙<2></p> <p>본 약관은 2024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</p> <p><u>부칙<3></u></p> <p><u>본 약관은 2026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</u></p>	